

# 사이버브랜치 표준 계약서

[고객보관용]



(이하 "갑")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을")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사이버브랜치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서류 : 1. 계약 일반사항

2. 계약 개별사항

3. 수수료 내역서

"갑"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 종 규 위 지배인 중소기업지원부장 김 양 수 [인]

# 계약 일반사항

'계약 일반사항'은 사이버브랜치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업무제휴 또는 개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특수사항은 '계약 개별사항'에 따르며 '계약 개별사항'은 '계약 일반사항'보다 우선한다.

####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사이버브랜치 개설을 통한 제3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내용에서 정하는 자금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사이버브랜치란 "을"의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자금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는 대금수납, 지급 및 유동성관리 등의 자금관리상품을 기업맞춤형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본사" 및 "지사"는 본점과 지점을 의미하며, "본지사"는 본점과 지점을 통칭하고 "관계사"는 "본지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 ③ "고객정보" 란 사이버브랜치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개인정보, 기타 "을"과 거래하고 있는 "갑"의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본 조의 내용은 "을"이 사이버브랜치를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포괄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 중 "갑"의 사이버브랜치에서 제공될 서비스 내역은 첨부된 "수수료내역서"의 개별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다.

- 1. 고객 맞춤 인터넷뱅킹 제공을 위한 환경 구축 : 별도 도메인을 가진 사이버브랜치 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맞춤 User Interface 구축, ERP Interface 등 초기 사이버브랜치 구축
- 2. 맞춤 인터넷뱅킹 관리운영 서비스 : 정기적 시스템 정비, ERP Interface 관리서비스, 스크래핑 장애관리 서비스 등의 '장애유지보수'와 "갑"의 계좌통합 및 타행 집금서비스를 위한 '스크래핑 관리'및 대외기관 연계 엔진 및 Interface 장애에 대한 복구서비스 등의 '대외기관 채널관리' 등 "갑"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리운영 서비스
- 3. 대금수납 서비스 : "을"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상계좌, CMS Code, B2B결제 및 VAN사, 금융결제 원 등의 제휴기관수납 등을 통해 "갑"의 매출처 및 대리점 등으로부터 지정된 "갑" 명의로 "을"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수납하는 서비스
- 4.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 "을" 및 다른 은행에 산재되어 있는 "갑"또는 "갑"의 지사 및 관계사들의 결제계좌 자금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며 이를 통해 자금관리 효율성 증대, 다양한 결제자금처리, 유휴자금의 수익성 상품 전환운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5. 대금지급 서비스 : "갑"의 결제자금을 "을"의 지급수단을 통해 대량이체, 건별이체방식으로 일괄 처리해주며 결제와 수반된 다양한 전산 자동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
- 6. 외환관리 서비스 : 외화 예금 조회, 수입대금 송금, 신용장 개설 신청 등 외화/무역 관련 서비스
- 7. 부가서비스 : 법인카드관리 서비스, 외화자금관리 서비스 등과 같이 "을"이 "갑"에게 제공 가능한 추가적인 서비스
- 8. 사이버브랜치 개발 시 개발업무내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추가적인 개발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 4 조 (시스템환경구축 및 전산 운용)

- ① 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초기 시스템 설치 및 전산운용 사항은 "갑"과 "을"의 전산담당부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갑"은 사이버브랜치 업무요건정의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을"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 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서비스개시 이전 "을"은 "갑"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을"의 뱅킹시스템과의 연계 및 전용 웹사이트의 사용자 환경설정을 완료하며 충분한 업무 테스트를 거쳐 상호 동의하에 서비스 개시 일을 정한다.

#### 제 5 조 (서비스 제공내역 및 수수료)

- ① "갑"이 사이버브랜치를 통해 이용할 서비스내역 및 해당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계약개별사항"과 "수수료 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여 거래 실행 시 동시출금 또는 매월 15일(해당일이 휴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수료 출금계좌에서 출금된다.
- ② 첨부된 "수수료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갑"과 "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재 작성된 "계약 개별사항" 및 "수수료 내역서"를 본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③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을"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갑"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 ④ 서비스별 수수료 징수는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한 방식에 따르며 "수수료 내역서"에 해당내용을 명기한다.
- ⑤ "갑"이 이용수수료를 연체할 경우 "을"은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 6 조 (계약기간)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계약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종료 또는 계약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 제 7 조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 취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갑" 이 서비스 이용해지를 요청한 경우
- 2. "갑" 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제5조 3항에 의거 "갑"이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갑"과 "을" 쌍방이 수수료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 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 조 (서비스 제공시간)

- ① 본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타 금융기관 관련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 ② "을"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 서비스 및 전체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제 9 조 (서비스 원칙 및 의무)

- ① 계약당사자는 각 측의 시스템에 대해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 ② 계약당사자는 해킹 등과 같은 보안 사고 발생을 인지할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호 통지한다.
- ③ 사고발생 시 계약당사자 각 측의 원인 분석 및 조치 완료 시 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
- ④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수신거래기본약관, 대상계좌의 관련 약관,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업무 규약, 기타 관계법령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그 범위내에 서 서비스를 처리한다.

#### 제 10 조 (프로그램 소유권)

서비스를 위해 "을"이 "갑"의 시스템에 설치한 모든 프로그램은 "을"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제 11 조 (신의성실 및 기밀유지)

① 계약당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 12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계약 위반이나 서비스 제공의 태만, 기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서비스 이용자가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금액을 배상하며, "을"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을"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을"은 "갑"과 "갑"의 지사(영업소 포함) 및 관계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본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사이버브랜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갑"이 "갑"의 시스템 및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3 조 (청렴계약조항)

- ①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갑"은 "을"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② "갑"은 "을"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 14 조 (해석 등)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해당 법규 및 관례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 제 15 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6 조 (협의 및 합의서 등의 효력)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 계약 개별사항

본 개별사항은 계약 일반사항 제3조 각 호의 상세한 업무처리 사항과 계약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갑"과의 특약 사항을 정의한 것이며, 계약 일반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 1 조 (ID/Password를 이용한 권한인증)

- ① "갑"은 "갑"의 본사, 지사 및 관계사의 "법인카드조회", "갑"이 "사이버브랜치 용도로 별도 저장한 내부데이터" 등의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ID/PW를 부여함으로써 "갑"의 본사, 지사, 및 관계사의 ID/PW 인증방식을 허용한다.
- ② 해당 서비스를 제외한 경우에는 반드시 "갑"이 "을"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만 사이버브랜치 접속이 가능하다.

#### 제 2 조 (유휴자금 운영을 위한 상품 제공)

- ① "을"은 "갑"에게 유휴자금의 수익성 상품 전환운영을 위한 MMF, 정기예금 등의 상품을 "갑"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의 정책에 따라 향후 해당 서비스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은 "을"이 제공하는 요구불 수신계좌를 "집금 모계좌"로 활용한다.

### 제 3 조 (입금자금의 인출)

제2조 제②항에서 정의된 "집금 모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입금일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후에 출금하기로 한다. 단, "갑"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처리할 수 있다.

#### 제 4 조 (예약업무처리)

- ① "갑"이 개별이체, 실시간 대량이체, 실시간 급여이체, 당·타행 자금집금, 관계사관리 등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등록한 예약일시 전까지 예약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별도 확인절차 없이 예약지정일시에 거래를 실행한다.
- ② 예약지정일시에 "갑"이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가 연체인 경우, 등록된 예약거래는 실행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5 조 (전용 웹사이트 도메인)

"갑"의 사이버브랜치 전용 웹사이트의 도메인은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

#### 제 6 조 (하드웨어 소유권)

"을"이 "갑"의 사이버브랜치 구축을 위해 제공한 서버 등의 하드웨어는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 7 조 (본지사관리 및 관계사관리 서비스 이용)

- ① 본지사관리 서비스는 본사가 지사 출금계좌로부터의 집금 및 배분 서비스, 지사 계좌관리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본사 대표자의 책임하에 발생하며, 관계사관리서비스는 관계사의 계좌로부터 다른 지급처로의 출금이체, 관계사의 출금계좌관리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갑"과 "갑"의 관계사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본 서비스를 신청한 "갑"의 관계사 전원의 서비스 이용 및 금융정보·신용정보 제공과 관련된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② 본지사 관리 및 관계사 관리서비스를 "을"이 "갑"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갑"의 본지사 및 관계사 상호간에 발생되는 금융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본지사 관리 및 관계사 관리서비스는 계약일반사항 제6조에 따른 계약이 끝나는 1개월 전까지 "갑"의 지사 및 관계사가 서면으로 서비스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반사항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 제 8 조 (글로벌 계좌조회 서비스 이용)

- ① 글로벌 계좌조회서비스는 "갑"이 신청(지정)한 해외법인/지사 계좌번호와 일치하는 SWIFT MT940 전문 수신내용을 "갑"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갑"이 신청한 "갑"의 해외법인/지사 계좌가 있는 현지 해외은행과 "갑"의 해외법인/지사간의 별도 약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서비스는 해외법인/지사 계좌가

있는 현지 해외은행이 "을"에게 통보하는 SWIFT MT940 전문의 정보를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을"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갑"의 해외법인/지사 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을"이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한다.

## 제 9 조 (해외법인관리 서비스 이용)

- ① 해외법인관리서비스는 "갑"의 해외법인이나 지사 또는 사무소 (이하 "해외법인")가 "을"의 "해외점포" 또는 해외제휴은행(이하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 중 "갑"이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 대해 "갑"에게 제공 가능한 다음의 서비스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갑"에게 제공될 서비스 내역은 별도의 해외법인관리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다.
  - 1. 계좌조회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에 대해 "갑"에게 조회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계좌이체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에서 출금하며 동일 국가 내의 "갑"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자금집금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다수의 계좌 중 "계좌이체"서비스에 등록된 계좌에 대해 이체를 활용한 집금업무를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를 말한다.
- ② "갑"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을"의 "해외점포"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갑"이 신청한 계좌의 예금주인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제휴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해외법인"과 해당 계좌가 개설된 "제휴은행"과 "을" 3자 간의 별도 약정이 필요하다. 본 서비스는 이 신청 및 3자 간의 별도 약정의 적용을받고 동시에 동 신청 및 약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 신청 및 약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 ③ "갑"이 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제휴은행"은 예금주인 "해외법인"에게 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거래의 성립은 "갑"이 전송한 조회 및 이체 지시가 "을"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수신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수신된 업무지시를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 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 ⑤ "갑"은 "을"이 이미 수신하여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전송한 "갑"의 이체 지급지시는 취소할 수 없다. "을"이 이미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전송한 이체지급지시의 취소는 예금주인 "현지법인"이 직접 해당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 ⑥ 본 서비스의 계약일 이후 "갑"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하는 등 지분보유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을"에게 동 변경 내용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 제 10 조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① 가상계좌서비스 업무의 범위

"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보유한 "을"의 계좌(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갑"의 고객예금 인출 또는 이체의 청구절차없이 "갑"이 지정한 입금모계좌에 입금처리하고 그 명세는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전송한다.

- ② 가상계좌의 개설
  - 1. "갑"은 "갑"의 고객이 연계업무를 이용하기 위한 자금이체전용 가상계좌를 "을"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 2. "갑"은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가상계좌는 은행을 통하여 "갑"에게 자금입금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식계좌(가상계좌)로서 본인확인을 위한 전산코드 또는 CMS코드로 사용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 3. "갑"은 "을"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을"이 허용한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업무처리시간
  - 1. 업무처리 시간은 원칙적으로 "을"의 영업 시간 내로 한다.
  - 2. "갑"은 "을"의 영업시간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외 연계서비스 업체가 정상적으로 접속되도록 자체 "서비스"의 업무개시를 완료하여야 한다.
  - 3. 시간외 연계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처리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을"의 다음 영업일 영업 시간 중에 처리하기로 한다.
- ④ 수표입금

연계입금은 현금에 의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타점권을 입금하고자 경우에는 "갑"의 전산시스템에서 보완하여야 하며. 타점권으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다음 영업일 타점권 결제 후에 출금할 수 있다.

⑤ 거래의 취소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처리한 내역은 취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입금분 중 전산장애, 착오입금("을"의 직원의 오조작, 이중입금,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을"은 동 거래의 취소를 "을"의 책임하에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⑥ 면책

"을"의 책임이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불능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면하며,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⑦ 준용사항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하고 "을"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전자금융공동 망 포함)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

#### 제 11 조 (외화자금관리 서비스)

- ① 서비스 업무의 범위
  - 1. 국내외화송금서비스: "갑"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외화자금으로 국내의 "을" 또는 타행 계좌로의 외화이체를 건별 또는 대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 2. 해외외화송금서비스: "갑"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외화자금으로 해외의 "을" 또는 타행계좌로의 외화이체를 건별 또는 대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 3. 외화집금서비스: "을" 및 타행에 산재되어 있는 "갑"의 결제계좌 자금을 "을"에 보유한 모계좌로 집금할 수 있다.
- ② 외화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 1.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송금수수료, 전 신료 및 해외은행중계수수료는 해외중계은행 및 "을"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을"이 수 수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을"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갑"은 이의 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 2. 이용 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산하며 매월 15일[해당일이 휴무일(토요일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을"이 "갑"의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별도의 통장, 증서, 인출청구서, 수표 등의 제시에 의한 예금 청구 절차 없이 인출하기로 한다.
  - 3. 납부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날(이하 "거래 완료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거래 완료일" 현재의 "을"이 고시한 외화여신 연체이자율이 적용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4. "을"이 이용 수수료를 자동 인출할 수 있는 "갑"의 수수료 인출 계좌는 "서비스 신청서"로 지 정하며 지정할 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명 확인된 계좌로 한 다.
  - 5. 본 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는 이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일에 "갑"의 수수료 인출계좌 또는 "갑"의 요구불 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한다
- ③ 면책

"을"의 책임이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면하며,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 제 12 조 (서비스 제공 관련 등록정보)

사이버브랜치의 개별서비스 및 수수료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정보는 아래의 정보에 의한다.

수수료 출금계좌		
급여이체 출금계좌		
가상계좌	채번요청좌수	

		정산 모계좌		
	현금집금	집금 모계좌		
CMS	0 0 51	CMS code		
	보관어음관리	CMS code		
			지사명 :	ID :
톤	분지사	본지사의 지사ID (동일 법인번호의		
집금서년	네스 신청시	지사만 등록 가능)		
			계좌번호 :	ID :
본지사	및 관계사	본지사 및 관계사의 ID		
관리서년	네스 신청시	및 출금계좌		
외화자금관리 서비스 신청시	원화 수수료 출금계좌	계좌번호 :		
	스 신청시	외화 출금계좌	계좌번호 :	

- **제 13 조 (관계사 관리서비스 고객 확인)** ① 아래에 표시된 "갑"의 관계사는 '계약 개별사항 제7조'에 명시된 "갑"의 관계사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갑"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사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아래에 표시된 "갑"의 관계사는 "을"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갑"의 관계사 금융정보·신용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갑"과 "갑"의 관계사가 부담하고, "을"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회사명	회사명
주 소	주 소
대표이사	대표이사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 <u>수수료 내역서</u>

서비스 구분					수수료		ИП
Cyber Branch 환경 구축	Cyber Branch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련 서비스 환경구축 (도메인, 스크레핑, 법인카드시스템, ERP연계 등)			개설 약정수수료 원		계약 다음 달 일시불 (과세대상이므로 10% 부가세 포함)	
	장애유지 보수	- 전용 ERP	방문을 통한 시: & 웹사이트 Inte  Interface 변경: a Base 관리	rface관리,			
Cyber Branch 관리운영서비스	스크래핑 관리	- B2B	지관리 B잔액 및 거래내 결제 상품조회, B카드 조회		월정액 (부가세 포함)		후취 (과세대상이므로 10% 부가세 포함)
	대외기관 채널관리	시 <i>스</i> - 각종 - 장이 Van	└템 업그레이드 등 Task Log 파일 배복구	용카드사 Interface			
	계좌통합관리			월정액	_ 원	후취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다디해지고 지그			당행집금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당타행자금 집금				월정액	원	후취
			실시간 대량이체		당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 일반지급 -	실시간 급여이체		타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대금지급서비스				당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A O I All	타행이체 건당	<u></u> 원	동시출금 후취
			예금주 성명조회		당행조회 건당	원	후취
		(본		사 및 관계사 여	금주조회 포함) 	타행조회 건당	<u></u> 원
		가상계좌수납		계좌채번	채번계좌당	_ 원	동시출금 후취
			<b>.</b>	입금내역제공	입금건당	_ 원	동시출금 후취
대금수납서비스				어음수탁	수탁건당	_ 원	동시출금 후취
	일반수납	납 CMS _	보관어음관리	거래정보조회	월정액	원_	후취
				추심수수료는 별	도 은행 정책에 따라	징수됩니	1다.
			현금집금	CMS Code 입금	입금건당	_ 원	동시출금 후취
				거래정보조회	월정액	<u></u> 원	후취

	본지사	당행집금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근시 /	월정액	원	후취	
본지사 및 관계사		본지사 및 관계사 자금배분	당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관리	본지사 및 관계사	근시시 및 단계시 시급메근	타행이체 건당	원	
	관리서비스	본지사 및 관계사 급여이체	당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근지시 및 단계시 답어이제 두	타행이체 건당	원	0/120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원	후취
	전용선방식	해외법인 계좌이체지시	월정액	원	후취
Global CMS		해외법인 자금집금지시	월정액	원	후취
GIODAI GWS	SWIFT 방식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원	후취
	SWIFT 60.4	해외법인 계좌이체지시	월정액	원	후취
	해외점포 연계 GCMS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후취
부가서비스	ជ	월정액	원	후취	

- ※ 1. 위의 서비스별 수수료는 동시출금 방식의 경우, 거래 실행시 해당 출금계좌에서 거래액과 합산되어 동시에 출금되며 정액 또는 후취방식의 경우, 계약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해당일이 휴무일(토요일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2. 단, 수수료 출금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출금일 이후 "을"은 "을"이 별도로 정한 출금일에 미결재금액을 출금,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브랜치 표준 계약서

[은행보관용]



(이하 "갑")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을")은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사이버브랜치 개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붙임 서류 : 1. 계약 일반사항

2. 계약 개별사항

3. 수수료 내역서

본인 및 자서확인란

"갑"

"을"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주식회사 국민은행 은행장 윤 종 규 위 지배인 중소기업지원부장 김 양 수 [인]

# 계약 일반사항

'계약 일반사항'은 사이버브랜치에서 제공될 수 있는 모든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되고, 업무제휴 또는 개별 서비스 이용에 대한 특수사항은 '계약 개별사항'에 따르며 '계약 개별사항'은 '계약 일반사항'보다 우선한다.

#### 제 1 조 (목 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사이버브랜치 개설을 통한 제3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내용에서 정하는 자금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정하는데 그목적이 있다.

#### 제 2 조 (용어의 정의)

- ①사이버브랜치란 "을"의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자금관리 및 운용을 지원하는 대금수납, 지급 및 유동성관리 등의 자금관리상품을 기업맞춤형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본사" 및 "지사"는 본점과 지점을 의미하며, "본지사"는 본점과 지점을 통칭하고 "관계사"는 "본지사"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회사를 말한다.
- ③ "고객정보" 란 사이버브랜치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 신용정보, 개인정보, 기타 "을"과 거래하고 있는 "갑"의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 제 3 조 (서비스의 범위)

본 조의 내용은 "을"이 사이버브랜치를 통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 항목을 포괄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의 내용 중 "갑"의 사이버브랜치에서 제공될 서비스 내역은 첨부된 "수수료내역서"의 개별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다.

- 1. 고객 맞춤 인터넷뱅킹 제공을 위한 환경 구축 : 별도 도메인을 가진 사이버브랜치 전용 웹사이트 구축 및 맞춤 User Interface 구축, ERP Interface 등 초기 사이버브랜치 구축
- 2. 맞춤 인터넷뱅킹 관리운영 서비스 : 정기적 시스템 정비, ERP Interface 관리서비스, 스크래핑 장애관리 서비스 등의 '장애유지보수'와 "갑"의 계좌통합 및 타행 집금서비스를 위한 '스크래핑 관리'및 대외기관 연계 엔진 및 Interface 장애에 대한 복구서비스 등의 '대외기관 채널관리' 등 "갑"의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리운영 서비스
- 3. 대금수납 서비스 : "을"의 시스템이 제공하는 가상계좌, CMS Code, B2B결제 및 VAN사, 금융결제 원 등의 제휴기관수납 등을 통해 "갑"의 매출처 및 대리점 등으로부터 지정된 "갑" 명의로 "을"에 개설된 계좌로 자금을 수납하는 서비스
- 4.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 "을" 및 다른 은행에 산재되어 있는 "갑"또는 "갑"의 지사 및 관계사들의 결제계좌 자금을 한곳으로 집중시키며 이를 통해 자금관리 효율성 증대, 다양한 결제자금처리, 유휴자금의 수익성 상품 전환운영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 5. 대금지급 서비스 : "갑"의 결제자금을 "을"의 지급수단을 통해 대량이체, 건별이체방식으로 일괄 처리해주며 결제와 수반된 다양한 전산 자동결제시스템을 제공하는 서비스
- 6. 외환관리 서비스 : 외화 예금 조회, 수입대금 송금, 신용장 개설 신청 등 외화/무역 관련 서비스
- 7. 부가서비스 : 법인카드관리 서비스, 외화자금관리 서비스 등과 같이 "을"이 "갑"에게 제공 가능한 추가적인 서비스
- 8. 사이버브랜치 개발 시 개발업무내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과"을"의 상호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으며, 기타 추가적인 개발업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추가계약서를 작성한다.

#### 제 4 조 (시스템환경구축 및 전산 운용)

- ① 본 서비스 제공에 관한 초기 시스템 설치 및 전산운용 사항은 "갑"과 "을"의 전산담당부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갑"은 사이버브랜치 업무요건정의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을"의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 야 하며, "을"은 "갑"이 제공한 내부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본 업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③ 서비스개시 이전 "을"은 "갑"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을"의 뱅킹시스템과의 연계 및 전용 웹사이트의 사용자 환경설정을 완료하며 충분한 업무 테스트를 거쳐 상호 동의하에 서비스 개시일을 정한다.

#### 제 5 조 (서비스 제공내역 및 수수료)

- ① "갑"이 사이버브랜치를 통해 이용할 서비스내역 및 해당 서비스 이용수수료는 "계약개별사항"과 "수수료 내역서"에 명시된 내용에 의하여 거래 실행 시 동시출금 또는 매월 15일(해당일이 휴무일(토요일 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수료 출금계좌에서 출금된다.
- ② 첨부된 "수수료 내역서"에 명시되어 있는 서비스의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추가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반드시 "갑"과 "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추가 계약을 맺은 경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재 작성된 "계약 개별사항" 및 "수수료 내역서"를 본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 ③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을"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갑"은 이의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 ④ 서비스별 수수료 징수는 "갑"과 "을"이 사전 협의한 방식에 따르며 "수수료 내역서"에 해당내용을 명기한다.
- ⑤ "갑"이 이용수수료를 연체할 경우 "을"은 별도 통보 없이 해당 서비스를 중지시킬 수 있다.

#### 제 6 조 (계약기간)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까지이며, 계약이 끝나는 날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종료 또는 계약변경 의사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동일조건으로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 제 7 조 (계약의 중지 및 해지)

-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무 취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갑" 이 서비스 이용해지를 요청한 경우
- 2. "갑"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3. 제5조 3항에 의거 "갑"이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갑"과 "을" 쌍방이 수수료에 합의하지 모하 경우
- ②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해 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 조 (서비스 제공시간)

- ① 본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을"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타 금융기관 관련거래는 해당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제한될 수 있다.
- ② "을"의 정기점검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의해 특정 서비스 및 전체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 통지 후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제 9 조 (서비스 원칙 및 의무)

- ① 계약당사자는 각 측의 시스템에 대해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 ② 계약당사자는 해킹 등과 같은 보안 사고 발생을 인지할 경우에 이를 신속하게 조치하고 상호 통지한다.
- ③ 사고발생 시 계약당사자 각 측의 원인 분석 및 조치 완료 시 까지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다.
- ④ "갑"과 "을"은 본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및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수신거래기본약관, 대상계좌의 관련 약관, 금융결제원의 전자금융공동망 업무 규약, 기타 관계법령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그 범위내에 서 서비스를 처리한다.

#### 제 10 조 (프로그램 소유권)

서비스를 위해 "을"이 "갑"의 시스템에 설치한 모든 프로그램은 "을"이 소유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 제 11 조 (신의성실 및 기밀유지)

- ① 계약당사자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
-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사항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제 12 조 (손실부담 및 면책)

- ① 계약 위반이나 서비스 제공의 태만, 기타 일방의 귀책으로 인하여 상대방 및 서비스 이용자가 금전적, 물질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귀책 사유가 있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금액을 배상하며, "을"의 손실부담 및 면책은 "을"의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② "을"은 "갑"과 "갑"의 지사(영업소 포함) 및 관계사 상호간에 발생하는 본 계약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사이버브랜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갑"이 "갑"의 시스템 및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 13 조 (청렴계약조항)

- ①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갑"은 "을"의 계약관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 접대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 ② "갑"은 "을"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거래중단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제 14 조 (해석 등)

본 계약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견이 발생한 경우 또는 본 계약에서 명시하지 않거나 본 계약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련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해당 법규 및 관례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하기로 한다.

## 제 15 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6 조 (협의 및 합의서 등의 효력)

본 계약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 및 합의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할 수 있다.

# 계약 개별사항

본 개별사항은 계약 일반사항 제3조 각 호의 상세한 업무처리 사항과 계약 일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갑"과의 특약 사항을 정의한 것이며, 계약 일반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 제 1 조 (ID/Password를 **이용한 권한인증**)

- ① "갑"은 "갑"의 본사, 지사 및 관계사의 "법인카드조회", "갑"이 "사이버브랜치 용도로 별도 저장한 내부데이터" 등의 서비스 이용 목적으로 ID/PW를 부여함으로써 "갑"의 본사, 지사, 및 관계사의 ID/PW 인증방식을 허용한다.
- ② 해당 서비스를 제외한 경우에는 반드시 "갑"이 "을"의 시스템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만 사이버브랜치 접속이 가능하다.

#### 제 2 조 (유휴자금 운영을 위한 상품 제공)

- ① "을"은 "갑"에게 유휴자금의 수익성 상품 전환운영을 위한 MMF, 정기예금 등의 상품을 "갑"의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할 수 있으며 "을"의 정책에 따라 향후 해당 서비스내용을 변경할수 있다.
- ② "갑"은 "을"이 제공하는 요구불 수신계좌를 "집금 모계좌"로 활용한다.

### 제 3 조 (입금자금의 인출)

제2조 제②항에서 정의된 "집금 모계좌"로 입금된 자금을 입금일로부터 다음 영업일 이후에 출금하기로 한다. 단, "갑"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에 처리할 수 있다.

#### 제 4 조 (예약업무처리)

- ① "갑"이 개별이체, 실시간 대량이체, 실시간 급여이체, 당·타행 자금집금, 관계사관리 등의 서비스 이용에 있어 등록한 예약일시 전까지 예약의 취소를 하지 않으면 별도 확인절차 없이 예약지정일시에 거래를 실행한다.
- ② 예약지정일시에 "갑"이 해당 서비스의 수수료가 연체인 경우, 등록된 예약거래는 실행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5 조 (전용 웹사이트 도메인)

"갑"의 사이버브랜치 전용 웹사이트의 도메인은 "을"이 소유권을 가진다.

#### 제 6 조 (하드웨어 소유권)

"을"이 "갑"의 사이버브랜치 구축을 위해 제공한 서버 등의 하드웨어는 "을"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 7 조 (본지사관리 및 관계사관리 서비스 이용)

- ① 본지사관리 서비스는 본사가 지사 출금계좌로부터의 집금 및 배분 서비스, 지사 계좌관리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본사 대표자의 책임하에 발생하며, 관계사관리서비스는 관계사의 계좌로부터 다른 지급처로의 출금이체, 관계사의 출금계좌관리 등의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갑"과 "갑"의 관계사와 관련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반드시 본 서비스를 신청한 "갑"의 관계사 전원의 서비스 이용 및 금융정보·신용정보 제공과 관련된 서면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 ② 본지사 관리 및 관계사 관리서비스를 "을"이 "갑"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갑"의 본지사 및 관계사 상호간에 발생되는 금융상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본지사 관리 및 관계사 관리서비스는 계약일반사항 제6조에 따른 계약이 끝나는 1개월 전까지 "갑"의 지사 및 관계사가 서면으로 서비스 해지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반사항 제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1년 단위로 자동연장된다.

#### 제 8 조 (글로벌 계좌조회 서비스 이용)

- ① 글로벌 계좌조회서비스는 "갑"이 신청(지정)한 해외법인/지사 계좌번호와 일치하는 SWIFT MT940 전문 수신내용을 "갑"이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본 서비스를 위해서는 "갑"이 신청한 "갑"의 해외법인/지사 계좌가 있는 현지 해외은행과 "갑"의 해외법인/지사간의 별도 약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본 서비스는 해외법인/지사 계좌가

있는 현지 해외은행이 "을"에게 통보하는 SWIFT MT940 전문의 정보를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을"의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갑"의 해외법인/지사 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을"이 일체 책임지지 아니 한다.

## 제 9 조 (해외법인관리 서비스 이용)

- ① 해외법인관리서비스는 "갑"의 해외법인이나 지사 또는 사무소 (이하 "해외법인")가 "을"의 "해외점포" 또는 해외제휴은행(이하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 중 "갑"이 본 서비스를 신청한 계좌에 대해 "갑"에게 제공 가능한 다음의 서비스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갑"에게 제공될 서비스 내역은 별도의 해외법인관리서비스 신청서의 서비스 내용과 동일하다.
- 1. 계좌조회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에 대해 "갑"에게 조회 업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2. 계좌이체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계좌에서 출금하며 동일 국가 내의 "갑"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업무를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3. 자금집금 :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에 보유한 다수의 계좌 중 "계좌이체"서비스에 등록된 계좌에 대해 이체를 활용한 집금업무를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를 말한다.
- ② "갑"이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을"의 "해외점포"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갑"이 신청한 계좌의 예금주인 "해외법인"이 "을"의 "해외점포"에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제휴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경우 "해외법인"과 해당 계좌가 개설된 "제휴은행"과 "을" 3자 간의 별도 약정이 필요하다. 본 서비스는 이 신청 및 3자 간의 별도 약정의 적용을받고 동시에 동 신청 및 약정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동 신청 및 약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한다.
- ③ "갑"이 본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제휴은행"은 예금주인 "해외법인"에게 본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거래의 성립은 "갑"이 전송한 조회 및 이체 지시가 "을"의 업무처리 시스템에 수신된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을"은 수신된 업무지시를 "갑"의 정당하고 유효한 거래의사로 간주 하여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 ⑤ "갑"은 "을"이 이미 수신하여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전송한 "갑"의 이체 지급지시는 취소할 수 없다. "을"이 이미 "을"의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전송한 이체지급지시의 취소는 예금주인 "현지법인"이 직접 해당 "해외점포" 또는 "제휴은행"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다.
- ⑥ 본 서비스의 계약일 이후 "갑"이 현지법인에 대한 지분을 추가 매입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 매각하는 등 지분보유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을"에게 동 변경 내용을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 제 10 조 (가상계좌 서비스 이용)

① 가상계좌서비스 업무의 범위

"갑"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보유한 "을"의 계좌(가상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갑"의 고객예금 인출 또는 이체의 청구절차없이 "갑"이 지정한 입금모계좌에 입금처리하고 그 명세는 따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갑"에게 전송한다.

- ② 가상계좌의 개설
  - 1. "갑"은 "갑"의 고객이 연계업무를 이용하기 위한 자금이체전용 가상계좌를 "을"에게 개설하여야 한다.
  - 2. "갑"은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에게, "가상계좌는 은행을 통하여 "갑"에게 자금입금거래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인식계좌(가상계좌)로서 본인확인을 위한 전산코드 또는 CMS코드로 사용됨"을 고지하여야 한다.
  - 3. "갑"은 "을"로부터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를 "을"이 허용한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업무처리시간
  - 1. 업무처리 시간은 원칙적으로 "을"의 영업 시간 내로 한다.
  - 2. "갑"은 "을"의 영업시간외 업무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간외 연계서비스 업체가 정상적으로 접속되도록 자체 "서비스"의 업무개시를 완료하여야 한다.
  - 3. 시간외 연계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미처리 또는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을"의 다음 영업일 영업 시간 중에 처리하기로 한다.
- ④ 수표입금

연계입금은 현금에 의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타점권을 입금하고자 경우에는 "갑"의 전산시스템에서 보완하여야 하며. 타점권으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 다음 영업일 타점권 결제 후에 출금할 수 있다.

⑤ 거래의 취소

"갑"의 요청에 의해 "을"이 처리한 내역은 취소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일 입금분 중 전산장애, 착오입금("을"의 직원의 오조작, 이중입금, 계좌번호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을"은 동 거래의 취소를 "을"의 책임하에 "갑"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은 이에 응하기로 한다.

⑥ 면책

"을"의 책임이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불능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면하며,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⑦ 준용사항

업무와 관련한 각각의 대상계좌에 대한 개별적인 업무처리는 대상예금의 거래약관을 준용하고 "을"이외의 타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이체는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 (CD공동망,전자금융공동 망 포함) 업무규약 및 세부처리지침을 준용하기로 한다.

#### 제 11 조 (외화자금관리 서비스)

- ① 서비스 업무의 범위
  - 1. 국내외화송금서비스: "갑"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외화자금으로 국내의 "을" 또는 타행 계좌로의 외화이체를 건별 또는 대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 2. 해외외화송금서비스: "갑"이 출금계좌에서 인출한 외화자금으로 해외의 "을" 또는 타행계좌로의 외화이체를 건별 또는 대량으로 실행할 수 있다.
  - 3. 외화집금서비스: "을" 및 타행에 산재되어 있는 "갑"의 결제계좌 자금을 "을"에 보유한 모계좌로 집금할 수 있다.
- ② 외화송금수수료 및 전신료
  - 1.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갑"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송금수수료, 전 신료 및 해외은행중계수수료는 해외중계은행 및 "을"이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을"이 수 수료를 변경할 경우에는 "을"은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며, "갑"은 이의 가 있을 경우 시행일 14일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 동 기간 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을"은 변경된 수수료를 시행일에 적용한다.
  - 2. 이용 수수료는 월 단위로 정산하며 매월 15일[해당일이 휴무일(토요일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을"이 "갑"의 수수료 인출계좌에서 별도의 통장, 증서, 인출청구서, 수표 등의 제시에 의한 예금 청구 절차 없이 인출하기로 한다.
  - 3. 납부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원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 날(이하 "거래 완료일"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납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거래 완료일" 현재의 "을"이 고시한 외화여신 연체이자율이 적용된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4. "을"이 이용 수수료를 자동 인출할 수 있는 "갑"의 수수료 인출 계좌는 "서비스 신청서"로 지 정하며 지정할 계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명 확인된 계좌로 한 다
  - 5. 본 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로 효력을 상실한 경우 효력상실 시점까지 발생한 미결제 수수료는 이 계약 해지의 효력 발생일에 "갑"의 수수료 인출계좌 또는 "갑"의 요구불 계좌에서 인출하기로 한다
- ③ 면책

"을"의 책임이 아닌 통신기기 및 회선장에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불능에 대하여 "을"은 그 책임을 면하며, 쌍방이 합의하거나 정한 방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은 그 책임을 면하기로 한다.

#### 제 12 조 (서비스 제공 관련 등록정보)

사이버브랜치의 개별서비스 및 수수료지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등록정보는 아래의 정보에 의한다.

수수료 출금계좌		
급여이체 출금계좌		
가상계좌	채번요청좌수	

		정산 모계좌		
	현금집금	집금 모계좌		
CMS	0 0 51	CMS code		
	보관어음관리	CMS code		
			지사명 :	ID :
톤	분지사	본지사의 지사ID (동일 법인번호의		
집금서년	네스 신청시	지사만 등록 가능)		
			계좌번호 :	ID:
본지사	및 관계사	본지사 및 관계사의 ID		
관리서년	네스 신청시	및 출금계좌		
외화자금관리 서비스 신청시	원화 수수료 출금계좌	계좌번호 :		
	스 신청시	외화 출금계좌	계좌번호 :	

- **제 13 조 (관계사 관리서비스 고객 확인)** ① 아래에 표시된 "갑"의 관계사는 '계약 개별사항 제7조'에 명시된 "갑"의 관계사관리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며 "갑"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처리한 업무에 대해서는 관계사가 직접 처리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아래에 표시된 "갑"의 관계사는 "을"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갑"의 관계사 금융정보·신용정보를 "갑"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갑"과 "갑"의 관계사가 부담하고, "을"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회사명	회사명
주 소	주 소
대표이사	대표이사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회사명 주 소 대표이사

# <u>수수료 내역서</u>

서비스 구분					수수료		ИП
Cyber Branch 환경 구축	Cyber Branch 서비스 이용을 위한 관련 서비스 환경구축 (도메인, 스크레핑, 법인카드시스템, ERP연계 등)			개설 약정수수료 원		계약 다음 달 일시불 (과세대상이므로 10% 부가세 포함)	
	장애유지 보수	- 전용 ERP	방문을 통한 시: & 웹사이트 Inte  Interface 변경: a Base 관리	rface관리,			
Cyber Branch 관리운영서비스	스크래핑 관리	- B2B	지관리 B잔액 및 거래내 결제 상품조회, B카드 조회		월정액 (부가세 포함)		후취 (과세대상이므로 10% 부가세 포함)
	대외기관 채널관리	시 <i>스</i> - 각종 - 장이 Van	└템 업그레이드 등 Task Log 파일 배복구	용카드사 Interface			
	계좌통합관리			월정액	_ 원	후취	
통합자금관리 서비스	다디해지고 지그			당행집금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당타행자금 집금				월정액	원	후취
			실시간 대량이체		당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 일반지급 -	실시간 급여이체		타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대금지급서비스				당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A O I All	타행이체 건당	<u></u> 원	동시출금 후취
			예금주 성명조회		당행조회 건당	원	후취
		(본		사 및 관계사 여	금주조회 포함) 	타행조회 건당	<u></u> 원
		가상계좌수납		계좌채번	채번계좌당	_ 원	동시출금 후취
			<b>.</b>	입금내역제공	입금건당	_ 원	동시출금 후취
대금수납서비스				어음수탁	수탁건당	_ 원	동시출금 후취
	일반수납	납 CMS _	보관어음관리	거래정보조회	월정액	원_	후취
				추심수수료는 별	도 은행 정책에 따라	징수됩니	1다.
			현금집금	CMS Code 입금	입금건당	_ 원	동시출금 후취
				거래정보조회	월정액	<u></u> 원	후취

	본지사	당행집금건당	원	동시출금 후취	
	근시 /	월정액	원	후취	
본지사 및 관계사		본지사 및 관계사 자금배분	당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관리	본지사 및 관계사	근시시 및 단계시 시급메근	타행이체 건당	원	
	관리서비스	본지사 및 관계사 급여이체	당행이체 건당	원	동시출금
		근지시 및 단계시 답어이제 두	타행이체 건당	원	0/120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원	후취
	전용선방식	해외법인 계좌이체지시	월정액	원	후취
Global CMS		해외법인 자금집금지시	월정액	원	후취
GIODAI GWS	SWIFT 방식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원	후취
	SWIFT 60.4	해외법인 계좌이체지시	월정액	원	후취
	해외점포 연계 GCMS 해외법인 계좌조회		월정액		후취
부가서비스	ជ	월정액	원	후취	

- ※ 1. 위의 서비스별 수수료는 동시출금 방식의 경우, 거래 실행시 해당 출금계좌에서 거래액과 합산되어 동시에 출금되며 정액 또는 후취방식의 경우, 계약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해당일이 휴무일(토요일포함)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2. 단, 수수료 출금일 현재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을 때에는 출금일 이후 "을"은 "을"이 별도로 정한 출금일에 미결재금액을 출금,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